

문서번호	보육여성과-9561
결재일자	2016.3.3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 무 관	출산다문화팀	보육여성과장	복지환경국장
조경미	김명현	이용철	전결 03/30 장기현
협 조			

2016년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

■ 근 거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, 제17조, 제25조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
-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5조
- 2016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

■ 2015년 추진실적

- 한부모가족 지원 : 9,353건, 991,789천원

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아 양 육 비	추가아동 양육비	학용 품비	생 활 보조금	교육비	교통비	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
지원대상	4,460	274	679	10	1,391	2,450	89
지원예산	445,780	13,700	33,950	500	277,626	211,133	9,100

- 2015년 한부모시설 지원 : 1개소, 97,672천원

■ 2016년 소요예산 : 858,501천원 (시비 재배정사업)

복 지 환 경 국
보 육 여 성 과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토여부	비고
추진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한부모가족지원법)	
사업추진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팀조 ()
이해관계인유무	○ 주민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단체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	
타자원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필요성	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조 ()

2016년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

- ◇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아동양육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,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학업 및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,
- 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I 사업 개요

■ 추진근거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, 제17조, 제25조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
-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5조
- 2015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

■ 추진방향

-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, 교통비, 교육비(입학금 및 수업료) 등의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
-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학업 및 취업활동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
- 시설 생활인의 사회적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맞춤형 지원

현 황

[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]

(단위 : 가구, 명)

구 분	총 계		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		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	
	가구수	구성원수	가구수	구성원수	가구수	구성원수
계	1,272	3,018	708	1,798	564	1,220
모자 가정	950	2,254	522	1,316	428	938
부자 가정	272	664	173	450	99	214
조손 가정	35	69	3	11	32	58
청소년모자	15	31	10	21	5	10

※ 자료출처 : 2016년 1월 기준,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통계

※ 2015년 대비 18가구(109명) 감소

[한부모가족복지시설(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)]

시설명	시설종류	설 치 일 (변경일)	소 재 지	시설장	종사자수	정원
꿈나무	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(공동생활지원형)	13.7.5 (15.5.1)	동작구 양녕로 245 402호, 501호, 502호 (상도동)	박미자	2명	5세대 (10명)

※ 운영법인 : 평화복지재단 (노원구 동일로 1097(공릉동), 대표 : 이수남)

※ 서울시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24개소이며, 우리구는 꿈나무 1개소만 소재하고 있음

II 2015년 추진실적

저소득 한부모 지원 실적 : 9,353건 / 991,789천원

(단위 : 가구, 천원)

구 분	양육비	추가아동 양육비	학용품비	생 활 보조금	교육비	교통비	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
지원인원	4,460	274	679	10	1,391	2,450	89
지원예산	445,780	13,700	33,950	500	277,626	211,133	9,100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: 97,672천원

<2016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>

-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액 인정기준 변경 :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최저생계비130%, 청소년 한부모 150% ⇒ 저소득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52%,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% 로 변경
- 혼인관계자 자격정비 강화 : 2015년 연2회 → 연4회
-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적용 : 취학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
 - 휴·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22세 연도말까지 지원한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되 최대 만25세 연도말까지 지원
-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범위 적용 : 수급자 자녀의 자립지원 도모
 - 수급(권)자 가구와 동일 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·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자녀를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보호

☐ 지원대상 및 기준

【저소득 한부모가족】

○ 지원대상

- 이혼, 사별 등으로 모 또는 부,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와 만18세 미만 (취학시 만22세 미만)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 이루어진 중위소득 52% 이하 한부모 가정

〈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〉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수	2인	3인	4인	5인	6인	비 고
중위소득 52% 이하	1,438,634	1,861,090	2,283,546	2,706,001	3,128,458	

● 선정기준

- 지원아동의 연령 : 만18세(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)이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
- 소득산정 : 연령초과 자녀(결혼자녀 제외)의 소득·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경우
 -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 소득·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(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여부)와 무관하게 가구 소득에 합산 (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* 제외)
 - 조손가족은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하나 함께 양육하는 경우 질병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

【청소년 한부모가족】

● 지원대상

- 만24세 이하 모 또는 부의 한부모가구 중 중위소득 60%이하의 가구

〈2016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〉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수	2인	3인	4인	5인	6인	비 고
중위소득 60% 이하	1,659,962	2,147,411	2,634,860	3,122,309	3,609,759	

● 선정기준

- 지원연령 : 만24세 이하의 한부모로서 만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말까지 지원(1991. 1. 1 이후 출생한 한부모)

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생활인】

○ 입소대상

-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(가족관계 등록부상 혼인기록이 없을 것)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

○ 입소기간

- 2년 이내로 하되,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(총 3년)

※ 학교 재학, 취업준비과정, 장애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

IV

2016년 저소득 한부모 지원계획

1

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

☐ 아동 양육비

- 대 상 : 만12세 미만 아동(2004. 1. 1 이후 출생)
- 내 용 : 아동 1인당 월100,000원
- 방 법 : 매월 20일 계좌입금
- 재 원 : 국비 50%, 시비 50%

☐ 추가 아동양육비

- 대 상 :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미만 아동
 - 만25세 이상 : 1990. 12. 31 이전 출생
 - 만5세 미만 : 2010. 1. 1 이후 출생
- 내 용 : 아동 1인당 월50,000원
- 방 법 : 매월 20일 계좌입금
- 재 원 : 국비 50%, 시비 50%

중·고등학생 학용품비

- 대 상 :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
- 내 용 : 자녀 1인당 월50,000원
- 방 법 : 매년 3. 20 계좌입금(연 1회)
- 재 원 : 국비 50%, 시비 50%

생계비(생활보조금)

- 대 상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
- 내 용 : 가구당 월50,000원
- 방 법 : 매월 20일 계좌입금
- 재 원 : 국비 50%, 시비 50%

※ 현재 동작구에는 생계비(생활보조금) 지원가구 없음

2 한부모 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

교 통 비

- 대 상 :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
- 내 용 : 자녀 1인당 분기별 86,400원 (1,440원/일, 연240일)
- 방 법 : 분기별 계좌입금(3, 6, 9, 12월)
- 재 원 : 시비 100%

교 육 비(입학금, 수업료)

- 대 상 : 고등학생 자녀
- 내 용 :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의 50%
- 방 법 : 분기별 계좌입금(3, 6, 9, 12월)
- 재 원 : 시비 50%, 교육청 50%

■ 아동 양육비

- 대 상 : 중위소득 60%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
- 내 용 : 월 150천원
 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1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차액으로 월5만원 지급
 - 단,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
- 방 법 : 매월 20일 계좌 입금

■ 자립지원촉진수당

- 대 상 :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, 직업훈련,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
- 내 용 : 가구당 월 100천원
- 방 법 : 매월 20일 계좌 입금

■ 검정고시 학습비

- 대 상 : 중위소득 60%이하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가구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
- 내 용 : 가구별 연1,540천원 한도내 최대 2년간 지원
- 절 차
 - ① 검정고시 학원 등록 : 청소년 한부모 → 검정고시학원 신청
 - ②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구 : 학원 → 구청
 - ③ 검정고시 학습비 계좌입금 : 구청 → 학원
 - ※ 검정고시 학원 등록시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지원대상자 확인
 - ※ 월 출석일 50%이상인 경우만 지원하며, 연 1회이상 검정고시 응시

☐ 고교생 교육비

- 대 상 :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3 ~ 60%이하 가구로서 고등학교 과정 교육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
- 내 용 : 연도별·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 - ※ 학비지원 대상자가 다른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, 면제받는 경우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음
- 방 법 : 분기별 계좌입금(3, 6, 9, 12월)

VI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계획

<2016년 주요변동내용>

- 종사자 인건비 인상 : 2015년 대비 4.78% 인상
- 수당체계 개편을 통해 일부 수당 기본급 포함 : 수당 11종 → 6종 축소
- 시설 운영비 인상 :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약3% 인상

【한부모가족복지시설(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)】

☐ 인건비

-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: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- 15090(2015. 12. 31.)호

☐ 운영비

- 시설 기본운영비 : 월200,000원
- 통합관리운영비(세대/월) : 1,151,540원 (여가부 기준 1,150,290원)
 - 여성가족부 지원기준 이상의 금액으로 지원함
 - 생계급여 등 개별수급을 받는 가구는 통합관리운영비 감액 지급
 - ※ 계산식 : 통합관리운영비 - 개별수급비 = 지급액

- 보육도우미 지원 : 영유아 1명 이상(개소/월) 500,000원
-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 : 120,000원(인/년)
-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: 4,000,000원
 -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
 - 취업 후 12개월 이상 안정된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에 지원
- 숙식 무료제공 / 자립 프로그램 제공 등

기타 생활인 추가지원

- 명절위문비 : 3회(설날, 추석, 연말) 10,000원/인(개인지급)
-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: 2회 15,000원/인(개인 또는 시설)
- 하계수련비 : 40,000원(시설지급)

VII

소요예산

사업비 : 858,501천원 [전액 시비 재배정 예산]

구분	항목	예산액	비고
계		858,501천원	
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	아동양육비	396,000천원	
	추가 아동양육비	12,000천원	
	학용품비	15,000천원	
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사업	교통비	184,000천원	기초교육급여 전환으로 감소
	교육비	120,000천원	
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사업	아동양육비	9,000천원	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	인건비 및 운영비	122,501천원	

※ 한부모가족 생계비, 청소년한부모가구 검정고시학습비, 교육비 등 전년도 미지원 항목에 대하여는 대상자 지급 요청시 지원함
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: 동주민센터
 - 2016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/제외/중지 대상자 결정처리 : 수시
- 저소득 한부모가족 혼인관계자 자격정비 실시 : 분기
- 지원급여 실적 관리 및 보고 : 분기
- 교육비 등 지급을 위한 중·고등학생 학적조회 실시 : 매분기

붙임 : 1. 교통비 지급 관련 서울시 지침 1부.
2. 교육비 지급 관련 교육부 지침 1부.
3.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. 끝.